

광주지방법원 2022. 6. 9 선고 2021나5868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2. 6. 9 선고 2021나58683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21. 5. 4 선고 2020가단508012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 주식회사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박철수

변론종결 2022. 5. 19.

판결선고 2022. 6. 9.

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. 5. 4. 선고 2020가단508012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선택적으로,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7809/587210 지분에 관하여 2015. 3. 26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153,739,7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153,739,7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아래와 같이 제2항의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 판단

가. 피고의 주장 요지

1)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CNC 가공기 10대를 150,000,000원에 매도하였고, 위 CNC 가공기 10대의 감정평가액은 208,800,000원이므로 소외 회사는 이를 매수함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얻은 것이고,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소극재산의 증가보다 적극재산의 증가가 상회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2) 소외 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435,000,000원인데,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480,000,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렵고, 이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한 것을 두고 소외 회사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.

나. 판단

먼저, 위 1)항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,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CNC 가공기 10대를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전혀 없고, 피고는 CNC 가공기 10대의 매매대금 중 150,000,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매매대금의 액수조차 특정하지 못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. 그리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CNC 가공기의 제작년도는 2015. 2.경인데 반하여,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CNC 가공기의 취득일은 2014. 3.경임을 알 수 있는바, 이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보유한 CNC 가공기는 피고의 CNC 가공기와는 다른 물건으로 보인다.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CNC 가공기 10대를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다음으로, 위 2)항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,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전인 2012. 6. 15.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, 채권최고액 1,500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4. 2. 5. 채권최고액을 480,000,000원으로 감축하는 변경등기가 경료된 사실,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435,000,000원인 사실은 각 인정된다. 그러나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2016. 3. 30. 기준으로 262,851,000원(=대여원금 260,000,000원 및 이자 2,851,000원)인 사실 또한 인정되는 바, 주식회사 I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으로 평가된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

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송인경, 판사 김진만, 판사 유상호

별지